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2006. 3. 24, 법률 제7915호)됨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대상의 가축사육 단계까지 확대와 관련된 사항, HACCP 운용평가 수행 기관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 1. 주요내용

가. HACCP 적용 대상의 가축사육단계까지 확대와 관련된 사항(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6)

(1) 법률을 개정하여 HACCP 적용 대상을 가축 사육단계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HACCP 작성·운용 및 지정 신청 관련 규정에 가축 사육단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HACCP 지정신청서류 구비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며, HACCP 지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범위를 정함.

교육 훈련 대상에 농업인을 추가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HACCP 영업자의 정기교육 시간을 단축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 비용 등을 규정함.

(3) 가축사육단계의 HACCP 신규 적용에 따른 적용 대상·기준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용이 기대되고, HACCP 지정 신청 등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로 영업자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HACCP 운용 평가 수행 기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7)

(1) 법률을 개정하여 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HACCP 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축산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도축장 등의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과 함

계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축산물의 포장 유통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8, 별표1, 별표2의2)

(1) 법률을 개정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포장방법은 농림부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포장 방법을 정함.

(3) 포장화가 시급한 닭고기, 오리고기를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교육 신설 등 축산물 위생교육의 강화(안 제46조, 제47조, 제48조)

(1) 법률을 개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을 교육받도록 하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며, 위생교육 실시기관을 규정함.

(3) 축산물 위생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의 방지 등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HACCP 지정 및 교육훈련 등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9조)

(1) 법률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 대상에 HACCP 지정 및 교육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HACCP 지정을 신청하는 영업자 등은 HACCP 담당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HACCP 관련 교육을 받는 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재검사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법률에서 위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됨.

#### 바. 행정처분 기준의 일부 조정(별표 11)

(1) 법률을 개정하여 HACCP 미운용 도축장

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에 따라 농림부령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HACCP 미운용 도축장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습범에 대한 행위 반복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축산물 위생관리상 중요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법령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등(안 제6조, 제28조의3, 제42조, 별표9)**

(1) 규제 완화 및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일부 사항의 보완 필요

(2)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점검일지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도축검사신청서 제출을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토록 함.

검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관에 검역원장이 지정하는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을 추가하고, 행정처분 결과의 위생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 함.

영업장에 비치하는 출입·검사 등 기록부를

1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자가생산 원유를 직접 사용하는 목장형 유가공업을 집유업 허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에 따른 원유의 위생관리의 보완사항 등을 규정함.

(3) 일부 규제의 완화로 영업자의 불편사항의 해소,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위생교육실시기관 등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영업장별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 3.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2의2] 축산물의 포장방법(제7조의7관련)

1. 포장이라 함은 포장대상 축산물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봉인하거나 개별적으로 진공 포장한 것으로서 외부에 합격검인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기가 된 축산물을 말한다.

2.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한 포장방법 및 유통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닭, 오리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고기, 오리고기 지육은 개별 포장한 후 외부에 합격검인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별도 3)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개별포장은 10~15마리 미만의 벌크 단위와 한

마리 또는 2~4마리까지의 소매단위 포장을 말한다.

나. 닭, 오리 도축장에서 부위별로 분할하여 포장하는 경우도 외부에 합격검인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별도 3)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부분육은 포장단위가 10kg 이하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다. 닭, 오리 도축장에서 가공용, 단체급식, 프랜차이즈 등을 위한 목적으로 중간유통단계나 축산물 가공장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벌크 포장하여 유통할 수 있다.

라. 다만,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등 닭고기,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에는 벌크 포장상태로 운송된 지육을 해포하여 그대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소매단위 또는 부분육 포장으로 된 것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때

의 소매단위 또는 부분육 닭고기, 오리고기는 식육포장처리장에 주문생산(개별포장)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마. 식육포장처리장에서 닭고기, 오리고기 지육 및 부분육을 해포 후 개별포장으로 재 포장하여 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식육포장처리장 영업자는 종업원중에서 자체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하고 동 담당자로 하여금 외부에 합격검인을 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별도 3)에 따라 표기한 후 유통하여야 한다.

바. 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를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도 상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3. 축산물 포장지는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TIP 미국, 닭고기 섭취, 췌장암 위험 감소 발표

쇠고기, 돼지고기같은 적색육을 장기간 많이 섭취하면 암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렵고 치명적인 췌장암 위험이 높아지고 닭고기같은 백색육은 반대로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수산나 라르손 박사는 '국제암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6만1천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7년에 걸쳐 육류, 생선, 닭, 계란 섭취량을 조사하고 이러한 식품의 췌장암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공육이나 생선, 계란은 췌장암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라르손 박사는 밝혔다.

라르손 박사는 이 조사분석 결과는 적색육 섭취를 줄이면 췌장암 위험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췌장암은 조기발견이 어렵고 진단되었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된 뒤이기 때문에 수술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뉴욕로이터=연합뉴스